

III.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1. 논의배경

- '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 -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기존 대기업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 도입됨
 - 제한적인 설립요건 및 세제 혜택의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-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등 세제의 개선이 요구됨
 - 연결납세제도는 각 子회사의 손익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임
 - 세제상의 중립성 확보, 국제적 정합성 제고,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함

2.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

- (현황) OECD 28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채택하고 있음
 - OECD 국가중 우리나라, 일본, 벨기에 등 10여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음
 - 일본은 2001년 도입 예정임
- (미국) 1917년에 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결납세형임
- (영국) 1976년 Group Relief라는 제도로 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개별손익이전형임
- (독일) 1965에 도입하였으며 연결대상기업은 주식법상의 利益釀出契約에 의함
- (프랑스) 1988년에 도입하였으며 지분율이 95% 이상인 모·자 회사가 연결대상임

3. 지주회사 관련 국내 세법의 현황 및 문제점

○ 지주회사 관련 국내 세법의 현황

- (설립시) 지주회사가 과점주주로 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공동출자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를 이연함
- (설립후)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금액의 일부는 익금 불산입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함

○ 문제점

- 지주회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음
- 지주회사 설립시 등록세, 취득세,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상 지원이 부족함

4. 개선방안

-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주회사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이 필요함
- 법인세법의 80%라는 임의적인 지분율에 따른 차등적용이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익금불산입 등의 규정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불리하므로 조정이 요망됨
-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임

III.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사점

1. 논의배경

-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 - 지주회사제도는 IMF, OECD 등의 권고에 따라 '99년 4월 국내에 도입됨
 - 그러나 자회사의 지분 확보 및 부채비율 100% 등 매우 제한적인 설립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
 - 더욱이 지주회사 설립 시 및 설립 후의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지주회사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
 - 연결납세제도는 국제적인 추세임
 -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속한 각 회사의 소득 및 손익을 합산하여 법인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임
 - 또한 OECD의 29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도입할 정도로 국제적인 추세임
 - 연결납세제도는 세계상의 중립성 확보, 국제적 정합성 제고,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함
-
-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
- 첫째, 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 형태의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함
 - 신규분야 진출, 적자사업부문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수년간 적자가 불가피함
 - 그러나 현행 세제상으로는 이러한 적자를 모회사의 흑자와 상계시키지 못하여 오히려 조세부담만 증가하게 되므로 단념하게 됨
 - 둘째,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함
 - 지주회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장애요인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함
 - 셋째,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함
 - 사업부문의 분사를 통한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은 외국에서는 일 반화되어 있음
 - 국내 기업들의 분사에 대한 동등한 세제 혜택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임
-
- 현재 일부 개정된 세제는 외국의 지주회사제도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세제의 개선이 요구됨

III.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사점

- 99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지주회사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조항을 신설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했지만 외국에 비해 아직 불리함
- 이에 따라 본고는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함

2.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

- (현황) OECD 28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채택하고 있음
 -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, 벨기에, 캐나다, 체코, 그리스, 아이슬란드, 이탈리아, 스위스, 터키 등 10여개 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음
 - 나머지 미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 등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,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부터 도입 예정임
- (형태) 연결납세제도는 크게 연결납세형과 개별손익이전형으로 구분됨 국가마다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음
 - 미국의 연결납세형은 개별손익이전형보다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이며 손익상계나 결손공제, 내부손익이연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론적으로 정비됨
 - 영국의 개별손익이전형은 당기결손 중 임의의 금액을 임의의 법인에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회피에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상세한 방지규정이 필요함
- (국가별 현황) 국가마다 연결대상 지분율, 과세대상소득 계산에 차이가 있음
 - 각 나라마다 연결대상 지분율과 과세대상소득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연결납세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
 - (미국) 1917년에 도입하였으며 지분율 80% 이상인 모·자회사가 연결대상임
 - (영국) 1976년에 도입하였으며 대상기업간의 결손금 계정과목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함
 - (독일) 1965년에 도입하였으며 주식법상의 이익갸출제도에 의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득 및 결손을 흡수 통산함
 - (프랑스) 1988년에 도입하였으며 그룹내 손익통산과 그룹내 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손익의 이연을 인정함

III.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사점

<표 1> 주요 국가들의 연결납세제도 현황

국가 기준	미국	영국	독일	프랑스
도입연도	1917년	1976년	1965년	1988년
연결대상	지분율이 80% 이상인 모·자회사 모두	지분율이 75% 이상인 그룹기업	지분율이 50%를 초과하는 모·자회사	지분율이 95% 이상인 모·자회사
강제여부	기업의 선택	기업의 선택	기업의 선택	기업의 선택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별기업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고 그룹 기업간의 재고자산 및 고정 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손익의 이연(그룹외로의 양도시점까지 이연됨) 등을 행한 다음 과세 소득을 합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상기업간에 결손금 계정 과목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 · 단, 그룹내에서의 고정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손익의 이연은 대상기업 간에는 강제적으로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회사의 이익이 모회사에 각출 되고 모회사는 적자가 발생한 자회사의 결손금을 전보 ·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득 및 결손금을 흡수 통산 · 그룹내에서의 고정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손익의 이연은 인정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손익통산과 고정 자산의 그룹내 양도에 관한 손익의 이연 인정 · 납세의무는 모회사에 있으나 각 자회사는 개별적으로 배분된 세액의 범위에서 모회사와 연대 책임을 부담

주: 1) 영국의 제도는 Group Relief 제도라 불리움

2) 독일의 제도는 기관제도라고 불리우며 연결대상기업은 주식법상의 利益釀出契約에 의함

3. 지주회사관련 국내 세법의 현황 및 문제점

○ 세법 개정 현황

- (취득세)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배제함

- 2000.1.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지주회사가 되거나,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(현물출자 포함)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함

III.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사점

- (법인세 및 특별부가세) 공동출자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
 - 계열사간 주식 공동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, 출자하는 회사는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음
- (이중과세 조정)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함
 -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배당이 주된 수입금액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
 -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익금불산입함

<표 2>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비율의 국제 비교

미 국		일 본	한 국	
지분율	과세제외비율	법인간 배당의 80%를 익금불산입	지분율	과세제외비율
20% 미만	70%		80% 이하	60%
20% ~ 80%	80%		80% 초과	90%
80% 이상	100%			
동일 계열그룹의 계열사인 경우 100% 제외		지분율 25% 이상인 경우 100% 제외		

주: 단, 상장·협회등록법인은 30% 초과시

○ 세법상의 문제점

- 지주회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
 - 지주회사제도와 함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설립전 보다는 설립후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됨
 - 이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장점인 비수익 부문의 분사화를 통한 M&A의 활성화라는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
- 지주회사 설립시 등록세, 취득세, 증권거래세에 대한 대폭 감면 또는 전액 면제가 필요함
 -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시 등록세의 경우 현재 자본금의 0.4%를 부과하는 등 전면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
 - 이러한 세금 혜택의 미흡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
III.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사점

4. 개선방안

- (한시적 도입) 지주회사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함

-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
- 연결납세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의 투명성, 조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 등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임
-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도기를 인정하면서 유인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며, 한시적인 세제의 지원이 하나의 방안일 것임

- (법인세법 조정) 지주회사 관련된 법인세 완화 조치가 요구됨

- 80%라는 임의적인 지분율에 따른 차등 조정이나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선진국에 비해 불리함
- 영국에서는 영국내 소재하는 법인이 자국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, 수취배당전액을 익금불산입하며 독일은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을 100%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함
-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불리한 비율을 택함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함

- (연결납세제도 도입)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

- 현행 세법은 독립기업을 전제로 구성됨에 따라 자회사들이 각각 이익과 결손 발생 시 상쇄되지 않고 이익이 난 회사는 법인세를 부담함
- 이로 인해 지주회사로 전환 시 과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지주회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
- 1997년에 지주회사를 허용한 일본이 2001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근거로 국내 도입을 비슷하게 자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기 도입이 요망됨

(임동춘 : dclim@hri.co.kr ☎3669-4074)

(이은철 : eclee@hri.co.kr ☎3669-4080)